



제 418회 국회 (정기회)
제3차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 수사기관 요청에 따른 불법촬영물 유통방지 의무 〉
■ 강유정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3478호)

2024. 9.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수석전문위원 김건오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2
1. 수사기관 요청에 따른 부가통신사업자의 불법촬영물 유통방지 의무	2

I. 제안경위

가. 발 의 자 : 강유정의원 등 11인

나. 발의연월일 : 2024. 9. 2.

다. 회부연월일 : 2024. 9. 3.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라 부가통신사업자 등이 자신이 운영·관리하는 정보통신망에서 피해자의 신고, 삭제요청 등을 통하여 불법영상물이 유통되는 사정을 알고도 조치를 취하지 않을 경우에는 처벌받도록 되어 있음.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불법영상물을 유통하는 디지털성범죄는 범죄의 특성상 초기에 불법영상물을 삭제·차단하는 것이 중요함. 수사기관이 범죄 초기에 불법영상물로 인한 피해를 인지하더라도 수사기관이 이를 차단하려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삭제요청을 하여야 하는데 이 과정에서 지체가 되어 불법영상물이 빠르게 유통되는 경우가 있음.

이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수사기관의 장이 불법영상물에 대한 삭제·차단 요청을 부가통신사업자 등에게 할 수 있도록 하고, 현행법에서는 수사기관의 장의 요청에 불응하는 부가통신사업자 등을 처벌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2조의5제1항).

Ⅲ. 검토의견

1. 수사기관 요청에 따른 부가통신사업자의 불법촬영물 유통방지의무

수사기관의 장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도, 부가통신사업자가 부가통신 서비스 내의 불법촬영물등을 필수적으로 삭제·접속차단 등의 조치를 취하도록 함(안 제22조의5제1항).

현행	개정안
제22조의5(부가통신사업자의 불법 촬영물 등 유통방지) ① 제22조 제1항에 따라 부가통신사업을 신고한 자(제22조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포함한다) 및 특수유형부가통신사업자 중 제2조제14호가목에 해당하는 자(이하 “조치의무사업자”라 한다)는 자신이 운영·관리하는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일반에게 공개되어 유통되는 정보 중 다음 각 호의 정보(이하 “불법촬영물 등”이라 한다)가 유통되는 사실을 신고, <u>삭제요청 또는</u>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단체의 요청 등을 통하여 인식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해당 정보의 삭제·접속차단 등 유통방지에 필요한 조	제22조의5(부가통신사업자의 불법 촬영물 등 유통방지) ① ----- ----- ----- ----- ----- ----- ----- ----- ----- ----- <u>삭제요청, 수사기관의 장의 요청 또는</u> ----- ----- ----- -----

현행	개정안
치를 취하여야 한다.	----- -----.
1. ~ 3. (생략)	1. ~ 3. (현행과 같음)
② ~ ⑥ (생략)	② ~ ⑥ (현행과 같음)

□ 검토의견

○ 현행 「전기통신사업법」 제22조의5제1항은 부가통신사업자 및 「저작권법」 제104조에 따른 특수한 유형의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게 불법촬영물등의 삭제·접속차단 등 유통방지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의무를 부여하고 있음.¹⁾

- 불법촬영물등 유통방지의무가 발생하기 위한 요건으로는 불법 촬영물등이 유통되는 사정을 ‘신고, 삭제요청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단체²⁾의 요청 등을 통하여’ 조치의무사업자³⁾가

1) 「전기통신사업법」 제22조의5(부가통신사업자의 불법촬영물 등 유통방지) ① 제22조제1항에 따라 부가통신사업을 신고한 자(제22조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포함한다) 및 특수유형부가통신사업자 중 제22조제14호가목에 해당하는 자(이하 “조치의무사업자”라 한다)는 자신이 운영·관리하는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일반에게 공개되어 유통되는 정보 중 다음 각 호의 정보(이하 “불법촬영물등”이라 한다)가 유통되는 사정을 신고, 삭제요청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단체의 요청 등을 통하여 인식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해당 정보의 삭제·접속차단 등 유통방지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에 따른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2에 따른 편집물·합성물·가공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

3.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아동·청소년성착취물

2)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제30조의5(불법촬영물 등의 신고 및 삭제요청 등) ① 법 제22조의5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단체”란 다음 각 호의 기관·단체를 말한다.

1.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에 따른 성폭력피해상담소

2. 「양성평등기본법」 제46조의2제1항에 따른 한국여성인권진흥원

3. 그 밖에 국가 또는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로부터 법 제22조의5제1항

인식한 경우이어야 함.

○ 현재는 디지털성범죄 불법영상물에 대해 수사기관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삭제를 요청한 후 관련 절차를 거친 후에 접속차단 요청 등이 이루어짐.

- 구체적으로 수사기관 등이 방심위에 삭제요청시 상정 안건에 대한 검토 후 안건을 상정하고, 이 안건에 대해 디지털성범죄 심의소위원회를 개최하여 심의·의결하는 과정을 거친 다음에 최종적으로 접속차단 요청 등이 이루어지고 있음.⁴⁾

- 따라서 긴급히 삭제·차단할 필요성이 있는 명백한 불법영상물의 경우 디지털성범죄정보 심의 과정에서 행정적 절차로 인해 수사기관의 장이 직접 삭제 요청을 하는 것보다는 조금 더 시간이 소요될 가능성이 있음.

○ 개정안은 불법촬영물등이 유통되는 사정을 ‘수사기관의 장의 요청으로 인해’ 조치의무사업자가 인식한 경우에도 조치의무사업자가 불법촬영물등 유통방지의무를 부담하도록 하려는 것임.

○ 디지털성범죄의 특성상 범죄 초기에 디지털성범죄물의 유통방지를

에 따른 불법촬영물등(이하 “불법촬영물등”이라 한다)의 삭제 지원 등에 관한 사업 수행에 필요한 비용을 보조받아 그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단체로서 방송통신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관·단체

3) 제22조제1항에 따라 부가통신사업을 신고한 자(제22조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포함한다) 및 특수유형부가통신사업자 중 제2조제14호가목에 해당하는 자를 ‘조치의무사업자’로 칭함(「전기통신사업법」 제22조의5제1항).

4) 디지털성범죄정보 심의 절차

[민원 및 유관기관 접수·상담] - [추가 모니터링] - [자율규제 요청] - [심의 이첩(자체 처리)] - [안건 검토] - [안건 상정] - [디지털성범죄심의소위 개최] - [디지털성범죄심의소위 폐회] - [차단목록 발송] - [음란사이트 차단 요청] - [사후 모니터링] - [DNA 추출 및 DB 구축]

위한 신속한 조치가 필요하고, 유통방지 과정에서 수사기관과 조치의무사업자간의 긴밀한 협조를 통해 유통방지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다는 점에서 개정안의 입법 취지에 공감할 수 있음.

- 인터넷의 특성상 빠르게 정보가 확산되고 디지털성범죄물이 한번 유포되면 피해자에게 돌이킬 수 없는 고통을 초래할 수 있음.
- 특히, 최근 디지털성범죄정보 심의 및 시정요구 건수가 크게 증가하고 있는데, 딥페이크 성범죄영상물의 경우 2024년 7월까지의 시정요구 건수(6,434건)가 전년도 총 시정요구 건수(7,187건) 대비 약 90% 수준까지 급증하고 있어 수사기관의 적극적인 역할이 필요하다는 점을 고려하여야 할 것임.

< 딥페이크 성범죄영상물 시정요구 현황 >

(단위 : 건)

구분	심의	시정요구
2021년	1,913	1,913
2022년	3,574	3,574
2023년	7,187	7,187
2024년 7월	6,435	6,434

자료: 방송통신심의위원회

- 다만, 강유정의원이 대표발의한 「성폭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3475)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3477)는 모두

사법경찰관에게 피해 영상물에 대한 삭제·차단 요청의무를 부여하고 있고,⁵⁾ 본 개정안은 위 두 법률안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법안이므로 위 두 법안의 처리 및 논의상황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는데, 여성가족위원회 법안소위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안(안)에서 사법경찰관리가 방심위에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접속·차단을 지체없이 요청하는 것으로 수정하여 의결한 것을 고려할 필요가 있어 보임.

○ 아울러 다음과 같은 관련 부처의 의견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주무부처인 방송통신위원회는 개정안의 취지에는 공감하나,

- 수사기관의 장에게 불법촬영물 삭제·차단요청 권한을 주는 것이 전문성에 기반한 각 기관간 균형(경찰은 수사, 여가부는 피해자보호, 방통위·방심위는 삭제·차단)을 깨뜨릴 수 있고,
- 표현의 자유 보장을 위해 구축된 심의절차 및 불법촬영물

5) ※ 「성폭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3475)

제14조의4(응급조치) 제14조 및 제14조의2에 기재된 범죄에 대하여 신고를 받거나 위반 또는 위반 의심 사실을 발견한 사법경찰관리는 즉시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피해 영상물 채증 및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또는 게시판 관리·운영자 등에게 해당 영상물 또는 게시판에 대한 삭제·차단 요청
2. 범죄행위의 제지 및 처벌 경고
3. 피해 신고·삭제 요청 등 관련 절차 안내
4. 상담소 또는 보호시설로의 피해자 인도. 다만, 피해자가 동의한 경우에 한정한다.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3477)

제25조의10(아동·청소년대상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응급조치) 제25조의2의 디지털 성범죄에 대하여 신고를 받거나 위반 또는 위반 의심 사실을 발견한 사법경찰관리는 즉시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피해 영상물 채증 및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또는 게시판 관리·운영자 등에게 해당 영상물 또는 게시판에 대한 삭제·차단요청
2. 범죄행위의 제지 및 처벌 경고
3. 피해 신고·삭제 요청 등 관련 절차 안내
4. 상담소 또는 보호시설로의 피해자 인도. 다만, 피해자가 동의한 경우에 한정한다.

신고에 대한 방심위의 24시간내 긴급 심의 후 삭제·차단 조치와 비교하여 어떤 방식이 더 유익한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임.

- 아울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7제3항제1호6)에 따라 수사기관의 장의 요청으로 방심위 심의를 거쳐 불법촬영물등이 삭제·차단되는 제도와 충돌되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임. 이와 관련하여 딥페이크 성범죄 대응 방안으로 제1호 중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2를 추가하는 내용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 건⁷⁾이 과방위에 계류중임.

○ 관계부처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의견은 다음과 같음.

- 디지털 환경에서 불법 촬영물의 유통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사업자의 신속한 삭제 및 접속차단 등 조치가 필요하므로,

-
- 6)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7(불법정보의 유통금지 등)
- ①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를 유통하여서는 아니 된다.
 - 7. 법령에 따라 분류된 비밀 등 국가기밀을 누설하는 내용의 정보
 - 8. 「국가보안법」에서 금지하는 행위를 수행하는 내용의 정보
 - 9. 그 밖에 범죄를 목적으로 하거나 교사(敎唆) 또는 방조하는 내용의 정보
 - ③ 방송통신위원회는 제1항제7호부터 제9호까지의 정보가 다음 각 호의 모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또는 게시관 관리·운영자에게 해당 정보의 처리를 거부·정지 또는 제한하도록 명하여야 한다.
 - 1.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요청[제1항제9호의 정보 중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에 따른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수사기관의 장의 요청을 포함한다]이 있었을 것
 - 2. 제1호의 요청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1조제4호에 따른 시정 요구를 하였을 것
 - 3.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나 게시관 관리·운영자가 시정 요구에 따르지 아니하였을 것
- 7) 김남희의원안(의안번호 제2203240호), 김용민의원안(의안번호 제2203479호)

수사기관이 직접 부가통신사업자 등에게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불법 촬영물의 확산을 방지하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는 의견임.

-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수사기관 장의 요청 시에도, ‘해당 정보의 유통방지에 필요한 조치’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또한 ‘불법성이 명백하다고 판단한 경우’로 제한될 필요가 있으므로, 개정안과 같은 강행규정 형태가 문제의 소지가 없는지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임.

문 의 처
02)6788-5225